

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

매각물건명세서

사건	2025타경15759 부동산임의경매			매각 물건번호	1	작성 일자	2026. 1. 8.	담임법관 (사법보좌관)	박웅종	<u>전자서명완료</u>
부동산 및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의 표시		별지 기재와 같음		최선순위 설정	2019.1.18.근저당			배당요구종기	2025. 8. 18.	
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, 점유할 수 있는 기간,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및 임차인이 있는 경우 배당요구 여부와 그 일자, 전입신고일자 또는 사업자등록신청일자와 확정일자의 유무와 그 일자										
점유자 성명	점유 부분	정보출처 구분	점유의 권원	임대차기간 (점유기간)	보 증 금	차 임	전입신고일자· 외국인등록(체 류지변경신고) 일자·사업자등 등록 신청일자	확정일자	배당 요구여부 (배당요구일자)	
조사된 임차내역없음										
<p><비고></p> <p>※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·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,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·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</p> <p>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</p> <p>비고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일괄매각 -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요함(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) 										

※1: 매각목적물에서 제외되는 미등기건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확히 기재한다.

2: 매각으로 소멸되는 가등기담보권, 가압류, 전세권의 등기일자가 최선순위 저당권등기일자보다 빠른 경우에는 그 등기일자를 기재한다.

부동산의 표시

2025타경15759

[물건 1]

1. 충청남도 보령시 남포면 봉덕리 493-16
답 4089.8m²
2. 충청남도 보령시 남포면 봉덕리 493-17
답 602.3m²
3. 충청남도 보령시 남포면 봉덕리 493-144
답 741.2m²
4. 충청남도 보령시 남포면 봉덕리 493-247
답 609.7m²

감정평가액		466,168,900	
회차	기 일	최저매각가격	매수신청보증금
1회	2026.02.24	466,168,900	46,616,900
2회	2026.03.31	326,318,000	32,631,800
3회	2026.05.12	228,423,000	22,842,300
4회	2026.06.16	159,896,000	15,989,600
- 일괄매각			
-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요함(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)			

『 탄소중립 선도도시 보령 ! 』



보령시 남포면



수신 대전지방법원 흥성지원 사무과 경매3계
(경유)

제목 사실조회서 회신(2025타경15759)

1.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「2025타경15759부동산임의경매」와 관련한 사실조회 내용을 붙임과 같이 회신합니다.

붙임 사실조회 회신내용 1부. 끝.



보령시남포면장



5656

산업팀장	김훈	부면장	박미영	면장	2025. 6. 12. 김종기
협조자					
시행	남포면-10253	(2025. 6. 12.)	접수		
우	33495	충청남도 보령시 남포면 충서로 1839-20	/ http://www.brcn.go.kr		
전화번호	041-930-4734	팩스번호	041-930-4739	/ chohyang80@korea.kr / 비공개(6)	

『 내정보는 지키고 안전하게 즐겨라! 』

□ 조회대상 토지

토지 소재지	지번	지목	면적(m ²)	비고
보령시 남포면 봉덕리	493-16	답	4,089.8	
보령시 남포면 봉덕리	493-17	답	602.3	
보령시 남포면 봉덕리	493-144	답	741.2	
보령시 남포면 봉덕리	493-247	답	609.7	

□ 회신내용

질 문	답 변	비고
1. 토지의 현황이 농지인지 여부	여 (휴경)	
2. 토지현황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전용허가가 이루어졌는지 여부	부	
3. 전용허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허가연월일, 허가조항, 전용목적, 허가신청자의 주소와 성명	해당없음	
4. 전용허가를 얻지 않고 토지현황이 변경된 경우 향후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	여	
5. 민사집행절차에서 매수한 때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필요한지 여부	여	